

議案検討報告書

1. 発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 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添 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 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年 4月 日

内務委員會

専門委員 安鍾



大田直轄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條例案은 1992. 3. 30.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 4. 1.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 保健環境検査 試験等 手數料는 그 동안 “大田直轄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의 規程에 그 根據를 두었으나, 同 手數料徵收에 關한 事項이 1992. 3. 13 制定公布된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研究設置 및 運營條例”에 別途로 規程됨에 따라 “大田直轄市 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상의 關聯規定을 削除하기 위함.

2. 主 要 骨 子

第3條(科率)의 別表 2-1을 削除

別表 2-1의 主要內容

- 가. 미생물학적 및 병독학적 검사 : 34종, 300원 ~ 16,350원
- 나. 기생충 검사 : 7종, 300원 ~ 3,000원
- 다. 소독약품 및 소독기구에 관한 시험 : 5종, 6,000원 ~ 23,500원
- 라. 의약품 및 화장품류의 시험 : 74종, 500원 ~ 100,000원
- 마. 식품, 식품첨가물 및 용기시험 : 31종, 1000원 ~ 25,000원
- 바.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 38종, 500원 ~ 54,000원

議案検討報告書

1. 発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中 改正 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添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 年 4月 日

内務委員會

専門委員 安鍾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條例案은 1992. 3. 30.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 4. 1.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案理由

現行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中 内務部의 改正條例準則에 依據 重要物品의 範圍 및 不用品賣却의 鑑定評價基準을 改正하여 處理節次를 簡素化하고 行政能率을 圖謀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가. 重要物品의 範圍

現行 重要物品의 範圍를 “物品當 單價 50萬원 以上의 物品” 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定數物品”으로 改正하여 現在 重點 管理하고 있는 「正數物品管理制度」 및 「物品需給管理制度」 와 相互連繫되도록 함.(案 第11條의 2)

나. 不用品賣却 鑑定評價基準

現行 不用品賣却時 “每物品當 帳簿上 取得價格이 單價 3百萬원 以上인 物品에” 대하여 鑑定機關의 鑑定評價額을 參酌하도록 되어 있으나, 鑑定 基準 金額이 少額이고 活用할수 없는 폐품 까지 하는등 行政力이 浪費되고 있어 이를 “單價 5百萬원 以上

의 再活用이 可能한 物品”으로 改正 現實化하여 行政能率性을 提高하고자 함. (案 第17條 第4項)

3. 檢 討 意 見

本 條例案은 大田直轄市 重要物品의 範圍 및 不用品 賣却의 鑑定評價 基準을 改善하여 處理節次를 簡素化하고 行政 能率을 圖謀코자 하는 事案으로

改正되는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同條例案 第11條의 規程에 의한 重要物品의 範圍 “物品當單價 50萬원 以上”에서 “定數物品”으로 調整하여 物品의 效率的인 管理가 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同條 第17條第4項에서 規定한 不用物品 賣却에 있어 “每物 品當 帳簿上 取得價格이 3百萬원 以上”인 物品에 대하여 鑑定價額

을 基礎로 處分하던 것을 “單價 5百萬원 以上의 再活用 可能한 物品”으로 調整하여 現實的인 業務 推進에 適合도록 하였음.

本 改正案 內容으로 볼 때 重要物品의 範圍를 現行 地方自治團體의 定數物品과 一致시켜 合理的인 物品管理가 되도록 하였으며 不用品

賣却에 있어서는 鑑定基準金額이 少額이거나 活用할 수 없는 폐품 까지 鑑定을 하는 등 行政力과 이에 따른 鑑定手受料가 不必要하게

浪費되고 있어 從前의 物品管理上 問題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事案 으로 肯定的인 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됨.

議案検討報告書

1. 発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 決算検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添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 합니다.

1992年 4월 日

内務委員會

専門委員 安鍾贊



大田直轄市 決算検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條例案은 1992. 3. 23.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어 1992. 3. 24.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現行 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 内務部의
改正條例準則에 의거 檢査委員의 選任方法 및 節次를 改正하고 決算
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上向 調整하여 現實化하고자 함.

2. 主 要 骨 子

가. 委員의 選任方法 및 節次

現行 委員의 選任은 委員 5人中 市議會議員 1人을 除外한 4人の
委員은 市長이 部數로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하도록 되어 있
으나, 이를 改正하여 委員의 選任은 市議會議長이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하도록 改正하고 다만, 委員中 2人은 市長이
推薦한 者로 할 수 있도록 함. (案 第2條 및 第3條)

나. 決算検査委員의 日費

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現行 20,000원에서 50,000
원으로 上向調整하여 現實化하고자 함.(案 第13條 別表2)

3. 檢討意見

本條例는 地方自治法 第125條의 規定에 依據 地方自治團體의 豫算執行에 관한 決算検査를 實施함에 同法 第125條 3項 및

同法施行令 第46條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検査委員의 選任은 地方議會에서 하도록 規定된바,

現行 條例를 調整 改善하여 地方自治團體 會計의 決算検査에 보다 內實을 기하고자 하는 事項으로서

改正되는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現行 決算検査委員의 選任은 委員5人중 市議會議員 1人을 제외한 4人の 委員은 市長이 배수로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도록 되어 있으나 本 檢査委員 5人을 市議會議長이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도록 하였고 다만 委員중 2人은

市長이 推薦하는 者로 할 수 있도록 하여 委員 選任에 대한 市議會의 權限을 強化도록 하였음.

또한 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現行 2萬원에서 5萬원으로 上向調整하여 委員 選任에 보다 專門性을 確保도록 하였음.

이는 豫算의 審議 및 承認權이 議會에 있고 決算 檢查 委員의 選任權도 議會에 있는 만큼 議長의 檢查委員 推薦은 議會運營의 能率面에서 適切한 方案으로 思料됨.